Ⅰ 서울풍물시장 관리·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□ 추진근거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재계약)

○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사무의 위탁)

□ 시설 및 위탁개요

구 분	내 용
소 재 지	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1(신설동)
시설규모	대지 6,535㎡, 연면적 7,578.7㎡
점포현황	823개(운영점포 807개, 공점포 16개)
재산관리	서울특별시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
위탁유형	시 설 형
예정기간	´23.1.1.~´25.12.31. (현 위탁기간 : ´20.1.1.~´22.12.31.)
수탁기관	㈜백상코퍼레이션(관리사무소 직원 24명)
위탁예산	2,306,620천원(´23년 예산안)

○ 위탁사무 : 서울풍물시장 관리·운영(시설형)

- 시장활성화사업 추진 및 시설물 유지・관리・환경개선
- 점포 임대차계약 및 소송 등 법률행위 대행, 관리비용 징수 활동 일체
- 고객의 안전유지 및 인근 주민 민원처리, 유통 및 상거래 질서 확립
- 기타 서울풍물시장 관련 업무

□ 재계약 추진경과

ㅇ ´22. 7.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계약 요건 충족(조직담당관)

– 종합성과평가 점수 : 78.67점 ※ 75점 미만 시 재계약 불가

ㅇ ´22. 9. 서울풍물시장 관리·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

ㅇ ´22. 10.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'적정'(조직담당관)

ㅇ ´22. 10.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 결과 '적격'(상권활성화담당관)

[재계약 추진절차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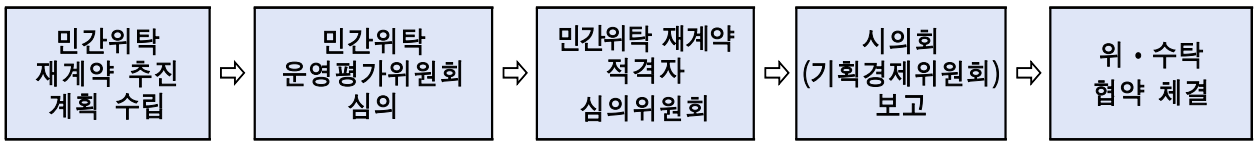

□ 재계약 사유

ㅇ 오랜기간 축적된 전문성 및 노하우, 시책사업으로 조성된 서울풍물시장에 대한 이해도 및 상인회와 쌓아온 신뢰관계 등을 감안하고,

ㅇ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풍물시장 관리·운영, 점포 재계약·사용료 감면 실무지원 등의 추진성과를 고려할 때 재계약 적정하다고 판단됨

※ 시설형은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(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)

□ 향후계획

ㅇ 비용 및 협약서 심사(계약심사과, 법률지원담당관) : '22. 11~12월

ㅇ 위·수탁 협약 체결 : '22. 12월